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년 9월 16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9월 6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6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2년 9월 16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한만석 기획경제국장)

가. 개정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및 개정사항 반영
 - 1)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연임 규정 정비(안 제4조제4항)
 - 2) 공유재산 및 물품의 주민 공개 조항 신설(안 제6조 신설)
 - 3)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신설(안 제11조제3항 신설)
 - 4) '사용·수익허가' 용어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15조, 제18조부터 제22조, 제30조)
-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폐지에 따라 인용 조항

정비(안 제26조제5항제4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위임사항 및 용어 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비·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작성되고 제출된 안건으로 판단됨,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